

# 재외문화원 세종학당 강사채용 조사결과 보고

## 1. 신고내용

- ▼▼▼는 행정직원 등의 채용 시 가족채용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경부터 자신의 남편을 주□□□문화원 세종학당 강사로 채용하여 남편의 이익을 도모한 의혹이 있음

## 2. 조사결과

- (규정위반여부) ▼▼▼은 배우자(▲▲▲)를 세종학당 강사로 채용 시에는 외교부 예규에 따라 공관장의 사전 승인(공문형식)을 얻거나, 해외문화홍보원 행정직원 채용지침에 따라 2016. 1. 이후에는 배우자의 세종학당 강사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였어야 했음

### ※ 관련규정(지침)

- 외교부 「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」 제3조(취업승인 및 보고)의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 있다.
- 해외문화홍보원 「재외한국문화원·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」 제3장 채용 6. 주의사항. 가. 주재관의 가족은 행정직원, 강사 등으로 채용 금지

- (사실확인) ▼▼▼은 주□□□ 총영사의 동반가족 취업 승인을 구두로 받아 배우자(▲▲▲)를 채용 공고 등 채용절차 없이 세종학당 강사로 채용
  - 이에 따라 ▲▲▲에게 2015. 4.부터 2017. 7.까지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총 1,372,050엔(약 13,752,600원) 지급됨
  - ▼▼▼은 강사 육아휴직, 강의 능력에 대한 불만 제기로 인한 일부 강사 교체, 특정 시간대 강의 기피, 타 기관 출강 등 한국어 강사 책임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우자(▲▲▲)를 강사로 채용하게 되었다고 답변함
  - 세종학당 강사는 문화원 소속 직원(행정 및 계약)이 아님. 문화원장 배우자 ▲▲▲의 한국어 강사자격은 적정하다고 보임(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, 당시 □□□ ○○○여고 한국어 강사)

## 3. 조치계획

- ▼▼▼(현 해외문화홍보원 ○○○○과 서기관) 주의 조치